

1. 개정이유

기존의 관리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을 분류군별로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분류군별로 수입·양도·양수·보관 등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야생동물을 생산, 수입, 판매 등을 하는 영업자에 대한 허가 규정을 신설하여 야생동물의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국내 생태계 보호, 질병 관리를 통한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88호, 2020. 12. 13. 공포, 2025. 12. 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지정관리 야생동물 양도·양수·보관·폐사 신고 위반 등 법률에서 신설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2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야생생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의2(야생생물의 용도별 수입·반입 허가기준) 법 제21조제1항제2호라 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수입 또는 반입 허용 세부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학술 연구용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야생생물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 또는 야생생물 관련 연구기관이 그 야생생물을 이용한 학술연구계획을 확정하고 그 필요 예산 및 시설 등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관람용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아 운영하는 공원·관광지·동물원·박물관 등의 시설에서 일반 공중의 관람에 제공할 것
3. 일시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이 출국 시 반출하기 위하여 반려(伴侶) 목적의 야생동물을 반입하는 경우: 일시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이 분명하고, 해당 야생동물의 반입 수량이 1명당 두 마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외국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인공 사육 또는 재배된 야생생물로서 번식·판매의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수출국의 정부기관 등이 발행

하는 인공 사육 또는 재배 증명서를 첨부하고, 해당 야생생물의 인공 사육 또는 재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야생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이 국내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없고, 야생생물 종의 생존에 영향이 없을 것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지정관리 야생동물의 공익적 목적의 수입의 대상) 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공익적 목적 등에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야생동물의 경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은 고위험병원체를 보유한 야생동물의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 또는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

나. 법 제7조에 따른 서식지외보전기관

다. 법 제8조의4에 따른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라.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시설

마.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관

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립수목원 및 공립수목원

제14조의4(영업허가 대상 야생동물 취급 규모) 법 제2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취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 판매업·수입업·생산업의 규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20개체 이상의 야생동물을 보유 및 사육하면서 연간 3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과충류·양서류만을 취급하는 경우 50개체 이상 보유 및 사육하면서 연간 10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월평균 10개체 이상의 야생동물을 판매하는 경우(과충류·양서류만을 취급하는 경우 2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야생동물 위탁관리업은 소유주의 위탁을 받아 10개체 이상의 야생동물을 일시적으로 보호 또는 사육하는 경우(과충류·양서류만을 취급하는 경우 20개체 이상의 야생동물을 일시적으로 보호 또는 사육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4조의5(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법 제22조의10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5와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2조의10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2조의10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4조의6(야생동물 영업자에 대한 점검 등) 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야생동물 영업자에 대하여 법 제22조의5제4항에 따른 허가 기준 및 법 제22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의 준수 여부를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할 때에는 점검의 시작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 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 계획을 미리 통지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에 착수할 때에 통지할 수 있다.

1. 점검의 목적

2. 점검의 기간 및 장소

3. 점검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4. 점검의 범위 및 내용

5. 제출할 자료

제39조의3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법 제22조의5에 따른 야생동물 영업에 관한 사무

부 칙

이 영은 2025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야생생물의 용도별 수입·반입 허가기준) ① 법 제21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수입 또는 반입 허용 세부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학술 연구용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야생생물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 또는 야생생물 관련 연구기관이 그 야생생물을 이용한 학술연구계획을 확정하고 그 필요 예산 및 시설 등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관람용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아 운영하는 공원·관광지·동물원·박물관 등의 시설에서 일반 공중의 관람에 제공할 것 3. 일시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이 출국 시 반출하기 위하여 반려(伴侶) 목적의 야생동물을 반입하는 경우: 일	제14조의2(야생생물의 용도별 수입·반입 허가기준) 법 제21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수입 또는 반입 허용 세부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학술 연구용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야생생물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 또는 야생생물 관련 연구기관이 그 야생생물을 이용한 학술연구계획을 확정하고 그 필요 예산 및 시설 등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관람용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아 운영하는 공원·관광지·동물원·박물관 등의 시설에서 일반 공중의 관람에 제공할 것 3. 일시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이 출국 시 반출하기 위하여 반려(伴侶) 목적의 야생동물을 반입하는 경우: 일

시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이 분명하고, 해당 야생동물의 반입 수량이 1명당 두 마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외국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인공 사육 또는 재배된 야생생물로서 번식·판매의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수출국의 정부기관 등이 발행하는 인공 사육 또는 재배 증명서를 첨부하고, 해당 야생생물의 인공 사육 또는 재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야생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이 국내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없고, 야생생물 종의 생존에 영향이 없을 것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시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이 분명하고, 해당 야생동물의 반입 수량이 1명당 두 마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외국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인공 사육 또는 재배된 야생생물로서 번식·판매의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수출국의 정부기관 등이 발행하는 인공 사육 또는 재배 증명서를 첨부하고, 해당 야생생물의 인공 사육 또는 재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야생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이 국내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없고, 야생생물 종의 생존에 영향이 없을 것

갖춘 경우에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을 매개하거나 전파시켜 공중위생을 해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신 설>

제14조의3(지정관리 야생동물의 공익적 목적의 수입의 대상) 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공익적 목적 등에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야생동물의 경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은 고위험병원체를 보유한 야생동물의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 또는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
 - 나. 법 제7조에 따른 서식지외보전기관

<신 설>

다. 법 제8조의4에 따른 유기

· 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라.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

른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시설

마.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과학관

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국립수목원 및

공립수목원

제14조의4(영업허가 대상 야생동

물 취급 규모) 법 제22조의5제1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취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 판매업·수입업·

생산업의 규모가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가. 20개체 이상의 야생동물

을 보유 및 사육하면서 연

간 3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파충류·양서류만을

취급하는 경우 50개체 이

상 보유 및 사육하면서 연

<신 설>

간 1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월평균 10개체 이상의 야
생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과충류·양서류만을 취급
하는 경우 20개체 이상 판
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야생동물 위탁관리업은 소유
주의 위탁을 받아 10개체 이
상의 야생동물을 일시적으로
보호 또는 사육하는 경우(과
충류·양서류만을 취급하는
경우 20개체 이상의 야생동물
을 일시적으로 보호 또는 사
육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4조의5(과징금의 부과 및 납
부) ① 법 제22조의10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5와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
22조의10제1항에 따라 과징금
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
의 내용과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부
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신 설>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
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
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을 때에
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
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3항
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
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
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
다.

⑤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으로부터 독촉을 받고 그 독촉
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
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시장
·군수·구청장은 법 제22조의
10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
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
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한
다.

제14조의6(야생동물 영업자에 대
한 점검 등) ① 관할 시장·군

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야생동물 영업자에 대하여 법 제22조의5제4항에 따른 허가 기준 및 법 제22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의 준수 여부를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할 때에는 점검의 시작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 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 계획을 미리 통지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에 착수할 때에 통지할 수 있다.

1. 점검의 목적

2. 점검의 기간 및 장소

3. 점검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4. 점검의 범위 및 내용

5. 제출할 자료

제39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9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25. (생략)

<신 설>

[illegible]

1. ~ 25. (현행과 같음)

26. 법 제22조의5에 따른 야생
동물 영업에 관한 사무

별표 1의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2호예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의2.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양도, 양수, 보관, 폐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73조제3항제7의2	30	50	100
하의3. 법 제22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 반입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73조제3항제7의3	30	50	100
하의4. 법 제2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양도, 양수, 보관, 폐사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73조제3항제7의4	30	50	100
하의5. 법 제22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보관중인 야생동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73조제3항제7의5	30	50	100
하의6. 법 제22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의 승계를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73조제3항제7의6	30	50	100
하의7. 법 제22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보관중인 야생동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73조제3항제7의7	30	50	100
하의8. 법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73조제3항제7의8	20	40	60

별표 2 제2호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루. 법률 제19088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폐사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률 제19088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4항	30	50	100
---	---	----	----	-----

[별표 1의5]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5 관련)

1. 영업정지기간의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과징금 부과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과징금 부과금액} = \text{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금액} \times \text{영업정지 일수} \times 0.1$

3. 제2호의 계산식 중 ‘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해당 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규 개설 또는 휴업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 매출금액, 월 매출금액 또는 일 매출금액을 해당 단위에 포함된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매출금액을 산정한다.
4.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과징금 부과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